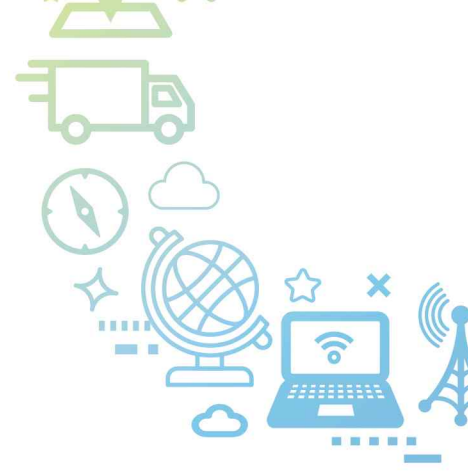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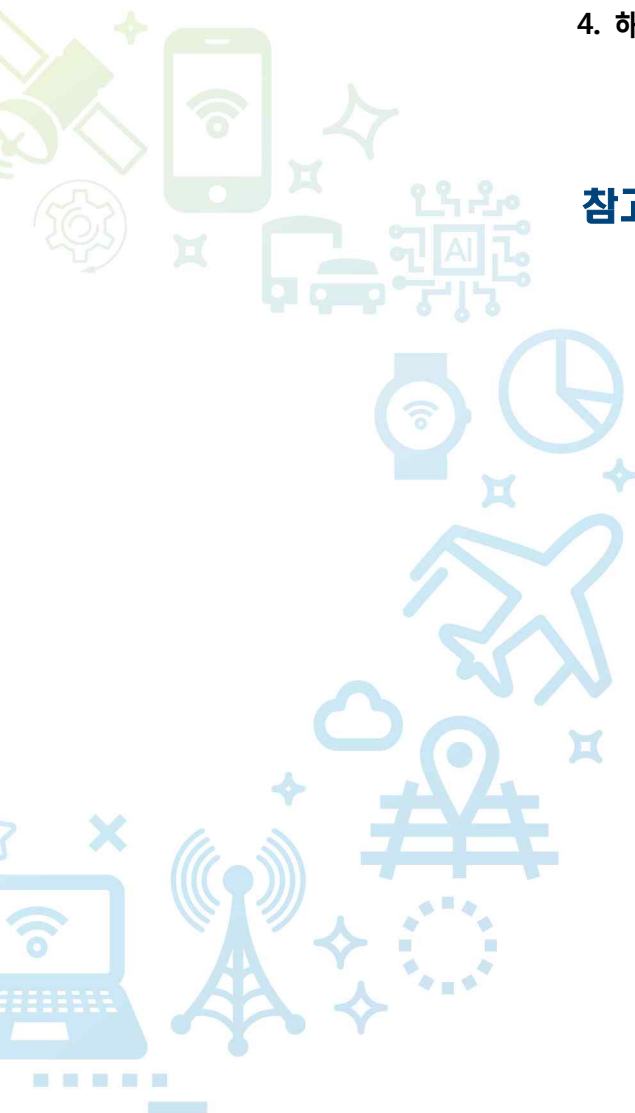
CONTENTS



위치정보 관련 법제 동향

1. 위치정보법 개정 동향	3p
2. 위치정보법 향후 개정 방향	7p
3. 국내 법제 동향(정보통신망법)	9p
4. 해외 법제 동향	13p

참고문헌	16p
------	-----



위치정보 관련 법제 동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류승균

01 위치정보법 개정 동향

■ 사물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 완화 (2018. 10.)¹⁾

- ▶ 종전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위치정보사업(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했음
 - 사업에 대한 진입규제로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이 있는데, 이 중 허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까다로움
 - 위치정보법상 기본 위치정보사업 허가 역시 연간 3~4차례에만 허가 심사를 진행하고, 허가 심사 시에는 제출된 서류의 서면 심사뿐 아니라 구두 설명(프레젠테이션)이 요구됨. 이에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받는 데 통상 준비 기간을 포함하여 수 개월이 걸림
 - 이러한 허가 요건은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 왔음
- ▶ 종전 위치정보법은 사물위치정보와 개인위치정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 사업자에게는 허가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는 신고를 각 요구하였음
 - 그러다가 2015년에 사물위치정보와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수준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물위치정보만을 대상으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였음(제9조 제1항, 2015. 2. 3. 개정되어 같은 해 8. 4.부터 시행)
- ▶ 이후 2018년에는 위치정보사업에서도 사물위치정보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의 경우에는 종전의 ‘허가’에서 규제를 완화하여 ‘신고’만 하면 되도록 위치정보법을 개정함(제5조의2 제1항, 2018. 10. 18.부터 시행)
 - 사물위치정보만을 대상으로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통위에 상호.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1) 이하 날짜는 시행일 기준

-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를 방통위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를 접수한 방통위는 신고 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 내용이 적법하면 이를 수리하게 됨
 - ▶ **2015년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더불어 2018년 위치정보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사물위치정보 활용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가 완성된 것으로 평가됨**
 - IoT 시대를 맞아 드론 관제, 택배 물류, 진열상품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물위치정보가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 사물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자의 규제 부담을 낮추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꾀할 수 있게 됨

표 1_위치정보법 개정 전·후 허가신고제 변경사항

사업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개인위치정보를 대상	사물위치정보만을 대상
위치정보사업 (위치정보 수집)	허가	허가	신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위치정보 이용)	신고(면제*)	신고 (스타트업은 1개월 내 사후 신고도 허용)	면제

※ 2019년 6월 말 기준 사물위치정보사업자 신고현황 (8건)

* 사물위치정보만을 대상으로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2015년 개정법에서 신고 의무를 면제함

■ 스타트업에 대한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신고의무 완화(2018. 10.)

- ▶ 종전에는 사업자의 규모와 상관 없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전에 방통위에 신고를 하여야 하였음
- ▶ 위치정보를 이용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회사 중 상당수는 스타트업 사업자인데, 사업 초기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이들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신고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음
- 심지어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위한 신고 의무가 법적으로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상당수임
- ▶ **2018년 개정 위치정보법은 소상공인*이나 1인 창조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여,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로만 신고하면 되도록 함(제9조의2 제1항)**

- 이로써 스타트업 사업자는 사전 신고 없이도 빠른 서비스를 개시하거나, 정규 서비스 개시 전 시험 운영(베타 테스트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음
- 시험 운영 후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도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
-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서 사전에 법률 자문을 받기 어려운 스타트업 사업자가 의도치 않게 범법자가 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i)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ii)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인 창조기업**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부동산업 등은 제외)을 영위하는 자(「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 나아가, 스타트업 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신고할 경우에는 상호·사업장 소재지 등 사항만을 신고하도록 하여, 신고 내용 자체도 간소화함
- ※ 2019년 6월 말 기준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 현황(55건)

■ 사물위치정보 수집 등 시 소유자 동의 획득 의무 완화(2018. 10.)

- ▶ 종전에는 개인위치정보뿐 아니라 사물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었고, 사물위치정보를 수집 등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물의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했음
- 그러나, 2018년 개정 위치정보법은 사물위치정보에 한해서는 그 수집 등 시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는 규정을 삭제함. 이에 사물위치정보 수집 등 시에는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게 되었음
- ▶ 다만,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물건을 판매하거나 대여·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을 구매하거나 대여·양도받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함(제15조 제3항)
- 종전에는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물건을 “대여”하는 자에 대해서만 위와 같은 고지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2018년 개정 위치정보법은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자에 대해서도 같은 의무를 부과함

- ▶ 개정법은 사물위치정보와 관련하여서는 보호의 필요성이 낮은바 사전 동의 의무를 철폐하는 대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치정보 수집 장치의 부착 사실은 고지토록 함으로써, 이른바 위험 기반의 접근(risk-based approach)에 따라 규제 수준을 합리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아동 개인위치정보 수집 등 시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하는 방법 규정 신설(2019. 6.)

- ▶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등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일반적으로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함(법 제25조 제1항)
- ▶ 그러나, 사업자들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혹은 아동이 임의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해버리는 경우가 실무상 상당히 있었음
- ▶ 이에 개정 위치정보법에서는, 사업자들이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하였는지 직접 확인할 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확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법 제25조 제1항, 영 제26조의2 제1항 각호)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하는 방법]

1.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2.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3.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4.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6.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위치정보 수집 등 고지 시 알기 쉬운 양식 및 언어 사용 규정 신설(2019. 6.)

- ▶ 개정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를 할 때, 알기 쉬운 양식 및 언어를 사용할 것을 규정함(제17조의2)
 - 위 규정은 (동의를 얻기 위한 고지가 아닌) 단순 고지뿐 아니라, 동의를 얻기 위한 고지 시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임
- ▶ 다만, 개정법은 알기 쉬운 양식 및 언어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않음
 - 개인정보 보호법은 2017년 개정 시 중요한 사항을 알기 쉽게 명확히 표시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구체적인 표시 방법을 행정안전부령으로 규정한 바 있음(제22조 제2항, 영 제4조 각호)
 - 위치정보법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개인정보 보호법령상의 기준을 참고할 수 있겠음

[참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중요한 내용 표시 방법]

1. 글씨의 크기는 최소한 9포인트 이상으로서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크게 하여 알아보기 쉽게 할 것
2. 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것
3.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

02 위치정보법 향후 개정 방향

-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2019. 4월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향후 위치정보법 개정 방향을 발표하였음. 발표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진입 규제 완화
 - 개인위치정보사업자는 현행 위치정보법에 따라 허가가 요구되나, 등록 등으로 진입 규제 완화를 추진

- 법 개정이 되면, 위치정보법에는 더 이상 허가 제도가 있지 않게 되고, 등록·신고 등 비교적 간이한 진입 규제만이 남게 됨

▶ 위치정보법 위반에 따른 사후규제 강화

-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진입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왔으나, 산업 활성화뿐 아니라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도 중요한 법익임
-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사후규제 강화를 통해 위치정보 오·남용을 통제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위치정보법은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두고 있지 않은데, 향후에는 위와 같은 행정제재들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함
 - ※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제재 규정을 두고 있고, 실무상 가장 효과적인 사후규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

▶ 사물위치정보 보호조치 의무 적정성 검토

- 현행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의 누출·변조·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요구하고 있음(제16조 제1항, 영 제20조 제1 내지 3항). 위 보호조치는 사물위치정보와 개인위치정보를 구분하고 있지 않음
- 사물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한 만큼, 사물위치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역시 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와는 달리 정할 필요가 있음

▶ 다른 관련 법률들과의 정합성 제고

-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률로는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이 있음. 특히, 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들은 해석상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보통신망법의 적용도 받음
- 그럼에도, 위치정보법은 정보통신망법 등 다른 법률들과 내용을 달리하거나(예 : 동의받는 방법), 규정하지 않은 사항(예 : 정보 처리위탁에 관한 규정)들이 있음
- 장기적으로는 위치정보법에서 특별히 달리 정할 이유가 있지 않은 한, 다른 관련 법률들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통일하여 사업자의 규제 준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겠음

03 국내 법제 동향 [정보통신망법]

■ 개요

- ▶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 개인정보 처리를 규율하고 있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함(제2조 제3호). 실무적으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매개하는 자로 보고 있음
- ▶ 위치정보법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도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
 - 위치정보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정보(위치정보)를 제공하는자인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함
 -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도,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위치 기반한 서비스 내용을 제공하는바, 역시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 ▶ 따라서, 위치정보법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들은 위치정보법뿐 아니라 정보통신망법도 준수할 필요가 있음. 최근 정보통신망법이 상당히 개정된바, 이 내용 역시 소개하고자 함

■ 사이버 보험 가입 의무화(2019. 6.)

- ▶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공제 포함)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함(제32조의3 제1항)
 - 적용 대상은 (i)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ii)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일일평균 1천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임(제32조의3 제1, 2항, 영 제18조의2 제1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도 위 요건에 해당 시 적용 대상임. 다만 수탁자는 적용 대상 아님

- ▶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최소 금액은 다음과 같음(영 제18조의2 제2항, 별표 1의2)

표 2_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최저가입금액(최소적립금액) 기준

적용대상 사업자의 가입금액 산정요소		최저가입금액 (최소적립금액)
이용자수 ²⁾	매출액 ³⁾	
100만명 이상	800억원 초과	10억원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5억원
	5천만원 이상 50억원 이하	2억원
1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800억원 초과	5억원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2억원
	5천만원 이상 50억원 이하	1억원
1천명 이상 10만명 미만	800억원 초과	2억원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1억원
	5천만원 이상 50억원 이하	5천만원

- ▶ 사이버 보험 의무 가입 제도 시행일은 6. 13.이나, 신규 보험 상품 개발에 관계로 보험사들의 실제 보험상품 출시는 7월 중순경으로 예상됨
 - 이와 관련하여, 방통위는 올해 말까지는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해당 기간 동안에는 제재를 하기 보다는 신규 제도 안내 및 준수 계도 활동에 초점을 맞출 예정임
- ▶ 준비금 적립을 통해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의적립금(자본계정)으로 적립하고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해 해당 임의적립금이 정보통신망법상 의무 이행을 위한 것임을 명시하여야 함

2) "이용자수"란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할 연도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일일평균 이용자수를 말한다.

3) "매출액"이란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할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말한다.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신고 의무 확대(2019. 6.)

- ▶ 2019. 6.부터 원칙적으로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신고하여야 함(제45조의3 제1항 본문)
 - 종전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통신판매업자 등 일부 사업자에게만 위 의무가 적용되었음
 - 다만, 개정법 하에서도 소상공인, 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지정 의무가 면제됨(제45조의3 제1항 단서, 영 제36조의6 제1항)
- ▶ 나아가 개정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겸직 금지 사업자)의 CISO는 법이 정한 CISO 업무 외 다른 업무는 겸직할 수 없도록 함
 - (i)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자이거나 (ii)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자가 이에 해당함
- ▶ 개정법은 CISO의 자격 요건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특히 겸직 금지 사업자의 CISO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요건도 규정하였음(제45조의3 제1, 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6 제2, 4항). 이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음

공통 요건(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적용)
(제45조의3 제1, 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6 제2항)

- A. 임원급인 사람일 것
- B. 아래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일 것
 1.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국내 또는 외국의 석사학위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국내 또는 외국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국내 또는 외국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법 제47조제6항제5호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소속인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겸직금지 사업자에 대한 추가요건

(제45조의3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6 제4항)

- A. 상근하는 사람일 것
- B. 아래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일 것
 1. 정보보호 분야의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정보보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과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5년(그 중 2년 이상은 정보보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어야 한다) 이상인 사람

▶ **참고로,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CISO 지정·신고 의무 외에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제27조 제1항 본문, 이하 "CPO") 지정 의무도 두고 있음**

- 다만, (i)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미만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ii)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미만으로서 전년도 말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천명 이하인 자(인터넷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업으로 하는 자)는 면제됨(제27조 제1항 단서, 영 제13조 제2항)
- CPO의 자격 요건으로 (i) 임원 또는 (ii)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의 지위가 요구됨. 별도로 지정하지 않을 시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대표자를 CPO로 봄(제27조 제2, 3항, 영 제13조 제1항)
- CISO 겸직 금지 사업자의 CISO는 CPO도 겸직할 수 없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입장임. 따라서, 겸직 금지 사업자는 CISO와 CPO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 **국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신설(2019. 3.)**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국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함(제32조의5)**

-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국외 사업자가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나,
 - 국외 사업자의 경우 연락처 불분명, 한국어 서비스 미지원 등의 이유로, 이용자가 민원 제기 등을 위해 연락하기가 쉽지 않고, 규제기관 입장에서도 규제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 이에, 국외 사업자의 경우 한국 내 대리인을 두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와 규제 집행력 강화를 꾀함
- ▶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i) 한국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ii) 일정 규모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국외 사업자임**

- 먼저, 한국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방통위는 ▲한국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지, ▲한국인을 이용 대상 중 하나로 상정하고 있는지, ▲국내에 사업 신고 등을 하였는지 등의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겠다는 입장임
- 다음으로, 규모 등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i) 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ii)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iii) 저장·관리되고 있는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자, 또는 (iv)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로 규정함(제32조의5 제1항, 영 제19조 제1항)
- ▶ **이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국외 사업자도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 내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할 것임**
 - 지정된 국내대리인의 연락처 등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하여야 함(제32조의5 제3항)
 - 국내대리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 고충 처리 등, 제27조 제1항 참고)와 방통위의 요청에 따른 관계 자료 제출 등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제32조의5 제1항)

04 해외 법제 동향

■ EU GDPR(2018. 5. 시행)

- ▶ **EU는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강화한 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을 2018. 5월부터 시행함**
 - GDPR은 EU 회원국 내 별도 입법 절차 없이 시행일부부터 모든 회원국 내 사업자들에게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가짐
- ▶ **DPR은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동의 획득 요건, 투명성 조치 의무 등을 강화하여 개인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였음**
 - GDPR은 개인정보 처리(수집·이용·제공·처리위탁 등)를 할 경우 적법한 근거(legal basis)가 있을 것을 요구함
 - GDPR을 위반할 경우 천문학적인 과징금(전세계 매출액의 최고 4%)이 부과됨
- ▶ **GDPR은 역외적용 규정을 두어 한국 사업자들에게도 일정한 경우 적용될 수 있음**

□ [GDPR 제3조(영토의 범위) 제2항]

본 규정은 개인정보의 처리가 다음 각 호와 관련되는 경우, 유럽연합 역내에 설립되지 않은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수탁처리자가 유럽연합 역내에 거주하는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도 적용된다.

- (a) 개인정보주체가 지불을 해야 하는지에 관계없이 유럽연합 역내의 개인정보주체에 게 재화와 용역을 제공
- (b) 유럽연합 역내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주체의 행태를 모니터링

- ▶ GDPR은 위치정보가 개인정보 중 하나에 해당함을 명시함. 위치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달리 취급하지는 않지만, '프로파일링'을 위해 이용되는 정보 중 하나로 예시하고 있음
 - GDPR은 개인정보를 정의하면서 위치정보("location data")를 명시적으로 예시하고 있음(제4조 제1항)
 - GDPR은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특별히 규제하고 있는데, 경제적 상황, 건강 상태, 개인적 선호, 위치정보 등을 자동화된 처리에 의해 분석하거나 예측하는 행위를 프로파일링이라고 정의함(같은 조 제4항)

■ EU ePrivacy 규칙(제정 중)

- ▶ EU 집행위원회는 기존 ePrivacy 지침(directive)을 대체할 ePrivacy 규칙(regulation)을 2017. 10월 발의함
 - ePrivacy 규칙은 전자통신 분야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GDPR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함
 - 애초 GDPR과 함께 2018. 5월 시행을 목표로 하였으나, 절차가 지연되어서 2019년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음
- ▶ ePrivacy 규칙안은 전문(recital)에서 "전자통신 메타정보(metadata)를 이용 시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메타정보에는 위치정보가 포함된다"라고 함(recital 17). 다만, 위치정보를 다른 메타정보와 달리 취급하지는 않음
- ▶ EU 집행위원회가 ePrivacy 규칙안을 제정할 때 배포한 설명자료(Explanatory Memorandum)에 따르면, 집행위원회는 규칙 제정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 설문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 중 49.1%가 통신 및 위치정보 이용을 허용하는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데 반대함
- 반면, 응답자 중 산업계에서는 35%가 예외 사유 확대에 찬성함

■ 미국 캘리포니아 주 CCPA(2020. 1. 시행 예정)

- ▶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캘리포니아 고객 프라이버시 보호법(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CCPA")을 2018. 8월 통과시키고, 2020.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 미국은 EU에 비해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다소 약하다는 평가가 있어 왔으나, 금번 CCPA는 다양한 부분에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하였음
- ▶ CCPA도 개인정보를 정의하면서 위치정보("Geolocation data")를 명문으로 포함하였는데, 다른 개인정보와 달리 취급하지는 않음(1798.140 (1)(G))



■ 류승균 변호사

- 2010. 2. KAIST 전산학과 졸업
- 2013. 2.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2013. 8. ~ 2016. 7. 공익법무관(방송통신위원회 등 근무)
- 2016. 8. ~ 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참고 문헌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대한민국 사물위치정보 날개를 달자,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정책 토론회 자료(한국인터넷진흥원 2018. 11. 7.)
- 2016년 국내외 위치정보 산업 동향보고서 (한국인터넷진흥원, 2016.12)

< 참고 URL >

- 위치정보사업 규제완화, 개정 위치정보법 시행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2018.10.18.)
- <https://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5030000&boardId=1113&qp=21&ctx=ALL&boardSeq=46458>
- 2019년 제7차 위원회 결과 (방송통신위원회, 2019.02.13.)
- <https://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5030000&boardId=1113&qp=12&ctx=ALL&boardSeq=46837>
- 2019년 제23차 위원회 결과 (방송통신위원회, 2019.05.15.)
- <https://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5030000&boardId=1113&qp=68&ctx=ALL&boardSeq=47287>
- 정보통신망법 및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방송통신위원회, 2019.02.13.)
- <https://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5030000&boardId=1113&qp=48&ctx=ALL&boardSeq=47343>



발행일 2019년 7월 1일

발행 및 편집 한국인터넷진흥원 데이터안전활용지원단 위치정보활용팀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Tel 1544.5118

- ▶ 본지에 실린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므로, 우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KISA Report의 내용은 무단 전재할 수 없으며,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